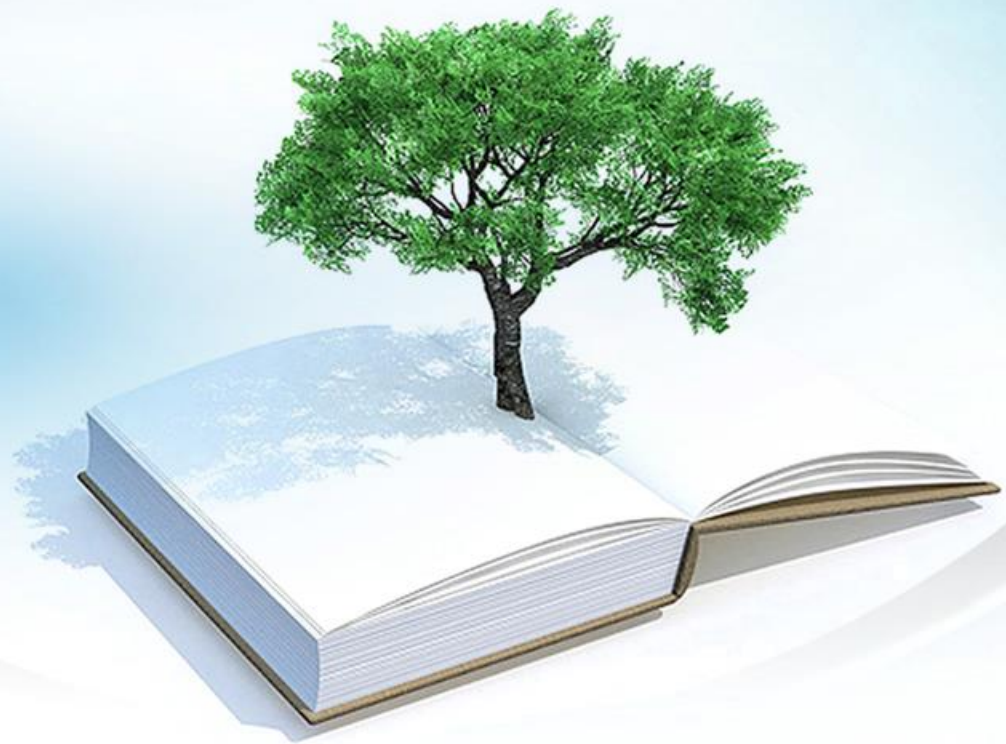


협동조합 회계 및 세무



Contents

I.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

II. 협동조합 회계

III. 협동조합 세무

I.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

❖ 협동조합의 정의

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, 생산,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, 지역사회에서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

❖ 협동조합의 사업범위

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

* 다만, 금융 및 보험업 제외(법 제45조제3항)

❖ 협동조합의 유형

- ① 소비자협동조합
- ② 생산자협동조합
- ③ 직원협동조합
- ④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

1.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

❖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

| 구분 | | 일반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| 주식회사 |
|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|
| 소유제도 | 소유자 | • 조합원 | | • 주주(주식소유자) |
| | 투자한도 | • 개인 출자 한도 제한 | | •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|
| | 지분거래 | • 제한적임 | | • 가능(지분양수도, 증여, 상속 등) |
| | 가치변동 | • 출자가격 변동없음 | | • 주식시장에서 수시변동 |
| | 출자금 상환여부 | • 상환책임 있음 | | • 상환의무 없음 |
| 내부통제제도 | 의결권 | • 1인1표 • 조합원 다수의 민주적 지배 | | • 1주1표 • 소수 대주주의 지배 |
| | 가입·탈퇴 및 제명 | • 가입·탈퇴 : 자유 • 제명 : 일정기간동안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, 조합원 제명 가능 | | • 가입·탈퇴가 아닌 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의해 권리·의무 발생 • 제명 : 해당없음 |
| | 경영기구 | •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| | • 지배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,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 자신이 경영 |

I.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

❖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

| 구분 | | 일반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| 주식회사 |
|--------|------|---|---|--|
| 이익배분제도 | 내부유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잉여금의 10% 이상 의무적립(납입출자금의 3배까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잉여금의 30% 이상(납입출자금의 3배까지, 사실상 100%) 의무적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한적인 내부 유보 |
| | 이용배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동조합 총배당액의 50%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당금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없음 |
| | 출자배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자금의 이자성격 (10% 이내로 배당)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, 제한없음 |

1.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

❖ 잉여금의 사용에 따라 협동조합 유형 결정

사례) 100원(판매금액) - 75원(생산비용) = 25원(잉여금)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① 상법상 회사 | 투자자 이윤 |
| ② 사업자협동조합 | 잉여금의 수혜자 : 사업자 - (농산물) 구매가격 인상 |
| ③ 직원협동조합 | 잉여금의 수혜자 : 직원 - 임금인상 - 근로조건 개선 |
| ④ 소비자협동조합 | 잉여금의 수혜자 : 소비자 - 판매 가격 인하 |
| 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| 잉여금의 수혜자 : 다양 -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 |
| ⑥ 사회적협동조합 | 잉여금의 수혜자 : 취약계층 등 - 취약계층 고용 -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-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 |

II. 협동조합 회계

❖ 기업의 3대 경영 활동

- 1) 재무활동(Financing activities) :
 -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퇴출 활동
 - 자금은 주로 차입(부채) 혹은 자본금으로 조달함
 - 차입/자본을 상환하여 자금을 퇴출하기도 함

- 2) 투자활동(Investing activities) :
 - 획득한 자금을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획득 및 퇴출 활동
 - 예 : 원자재 및 상품의 매입, 공장/기계의 매입, 무형자산의 획득

- 3) 영업활동 (Operating activities) :
 - 재무활동 및 투자활동으로부터 확보된 자원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 목적을 실행하는 활동
 - 생산활동, 판매활동, 인력의 조달 및 임금지급 등

재무회계는 이러한 3대활동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착하고 처리하여 '재무제표' 라는 총괄표를 만드는 과정

II. 협동조합 회계

❖ 재무제표의 종류

| | |
|----------------|--|
| 재무상태표 | 특정한 시점(보통 회계기간말)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로서 조합원이 위탁한 재산을 일정한 형식으로 보여줌 |
| 손익계산서 | 일정기간(회계기간) 협동조합의 경영성과 또는 운영성과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표 |
|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| 일정기간 협동조합의 출자금 및 잉여금 등 자본항목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 |
| 현금흐름표 | 일정기간 협동조합의 현금흐름의 유출입을 보여주는 표 |
| 주석 | 이상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회계기준이나 회사의 회계정책 및 기타 필요한 재무정보를 정리한 재무제표에 대한 보충적 설명자료 |

II. 협동조합 회계

❖ 협동조합 회계의 목적

- **주식회사 등 일반기업이 자본결사체**로서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배당극대화를 위한 이윤추구, 채권상환 및 이차지급의 안정성을 위한 수익성 및 유동성, 이를 위한 **원가절감과 구조조정** 등의 정보보고를 중시
- **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인적결사체**로서, 생산자, 직원, 소비자 등인 조합원들의 복리후생의 증진과 상부상조, 직원들의 안정된 고용과 환경, 민주적인 의사결정, 협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성장, 다른 협동조합 및 지역에의 기여 등에 관한 정보보고를 중시
- 물론 협동조합도 경쟁적인 시장환경에서 생존하고, 성장하기 위해 일반기업과 유사한 재무분석과 경영기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자본중심의 전략으로 변질되면 협동조합의 본성을 잃을 가능성이 커짐

II. 협동조합 회계

❖ 협동조합 회계의 종류

| | |
|------|---|
| 재무회계 | 조합원, 채권자, 거래처, 정부 등 외부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공통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의 회사의 재무상태, 경영성과, 현금흐름의 내용 등을 제공하는 회계 |
| 관리회계 | 협동조합 경영진, 직원 등이 경영전략수립 또는 투자의사결정, 원가절감, 마케팅 등 경영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양식의 보고서 형태로 수시로 제공하는 회계 |
| 세무회계 | 정부의 재정수요 및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법에 맞게 제공하는 세무회계 |

II. 협동조합 회계

❖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

-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
-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와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
- 협동조합은 정관·규약·규정, 총회·이사회사록, 회계장부,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하고,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동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
-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직전년도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매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
- 주요경영공시자료에는 <정관>, <사업계획서>, <사업결산 보고서>, <총회, 대의원 총회,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> 등이 포함된다.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협동조합과 세금

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
| 1. 손익계산서 | | | 과세문제 |
| 매출액 | | 1,000 | 부가가치세 |
| 매출원가 | | 500 | |
| 판매비와 관리비 | - 인건비 | 200 | 근로소득세 |
| | - 기타판관비 | 100 | |
| 영업외손익 | | | |
| 법인세비용 | | | |
| 당기순이익 | | 200 | 법인세 |
| 2.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| | | |
| 전기이월이익잉여금 | | 100 | |
| 당기순이익 | | 200 | |
| 이익처분(조합원배당) | | 100 | 배당소득세 |
| 차기이월이익잉여금 | | 200 | 배당소득세 |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법인세 의의

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조세를 말한다

❖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 의무

| 구 분 | 각 사업연도 소득 | 토지 등 양도소득 | 청산소득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영리법인 | 국내외 모든 소득 | 과세 | 과세 |
| 비영리법인 | 국내외 수익사업 소득 | 과세 | 과세제외 |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법인세 계산구조

당기순이익

- (+) 익금산입/손금불산입
- (-) 손금산입/익금불산입

각사업연도 소득금액

- (-) 이월결손금 [10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 세무상 이월결손금]
- (-) 비과세소득
- (-) 소득공제

과세표준

- (x) 세율 [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%, 200억원 이하 20%, 200억초과 22%]

산출세액

- (-) 세액공제, 세액감면
- (+) 가산세

- ① 세액감면 :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 세액감면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,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
- ② 세액공제 :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,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,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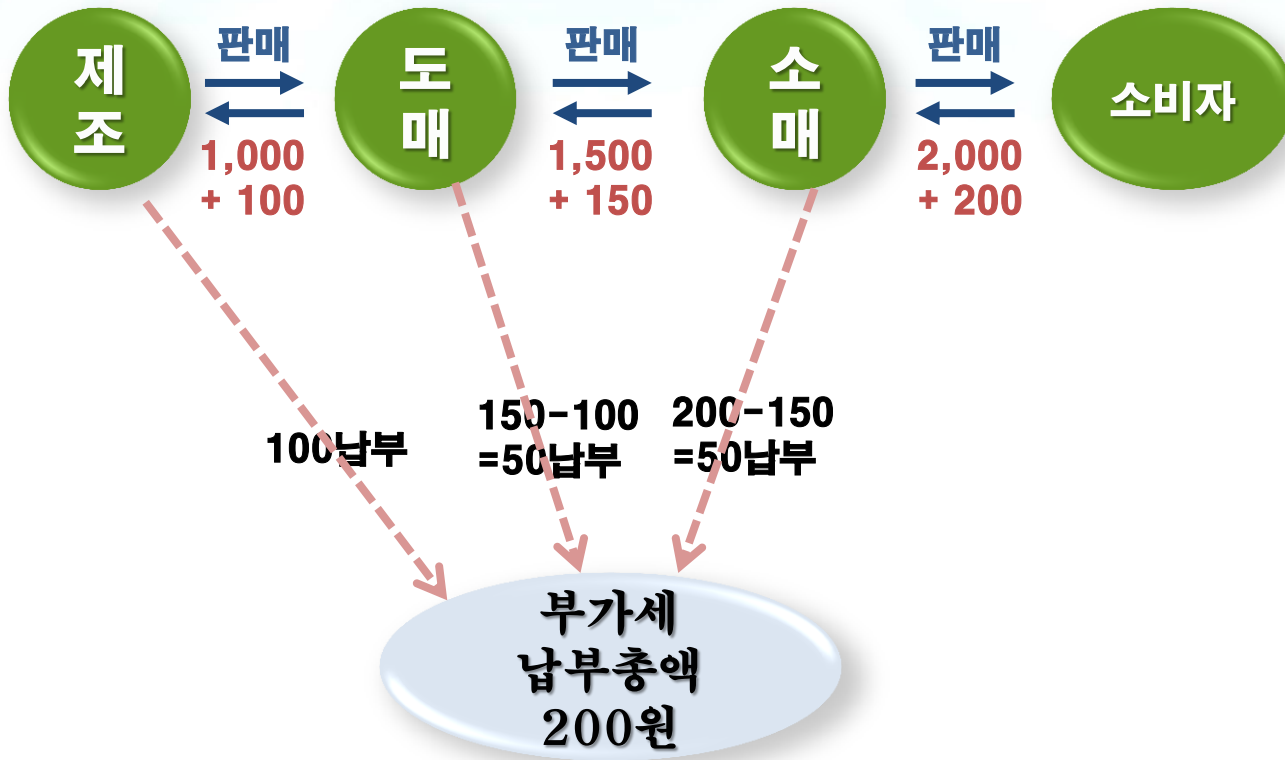
결정세액

<결산확정>

법인 재무제표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부가가치세 이해

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부가가치세 면세



곡물, 과일, 채소, 육류, 생선 등 가공
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



연탄, 무연탄, 복권의 판매



병·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
(단, 미용목적 성형수술,
수이사 의료보건용역 과세전환)



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, 강습
소,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업
(무도학원, 자동차운전학원 과세전환)



도서, 신문, 잡지(광고 제외)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사업자 등록번호(XXX-XX-XXXXX)

| 3자리 | 2자리 | 5자리 |
|---------|--|------------|
| 청 및 서코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개인과세 01~79• 개인면세 90~99• 영리법인(본점) 81,86,87• 영리법인(지점) 85• 종교단체 89• 비영리법인 82• 국가지방단체 83 | 지정일자순으로 부여 |

❖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: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부가가치세 계산구조

매출세액

= 공급가액 X 10% , 0%

△ 매입세액

-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
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
-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
- 의제매입세액, 변제대손세액,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

- (-) 공통매입세액 (면세사업분)
- (-)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

△ 경감·공제세액

- 전자신고 : 1만원
-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: 연간한도 500만원(일반 1.3%, 간이2.6%) → 법인제외
-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: 연간한도 100만원(건당 200원) → 법인제외

= 납부할 세액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계산사례(법인)

업종 : 도.소매/생활용품

과세기간 : 1/1~3/31

| 구 분 | | 공급가액 | 세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매출 | 세금계산서 | 50,000,000 | 5,000,000 |
| | 신용카드 등 | 45,000,000 | 4,500,000 |
| | 기타 | 15,000,000 | 1,500,000 |
| | ① 매출계 | 110,000,000 | 11,000,000 |
| 매입 | 세금계산서 | 82,500,000 | 8,250,000 |
| | 신용카드 등 | 7,000,000 | 700,000 |
| | ② 매입계 | 89,500,000 | 8,950,000 |
| ③ 납부세액(①- ②) | | | 2,050,000 |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

-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,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
-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
- 3 비영업용소형승형차의 구입·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
- 4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
- 5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법적적격증빙

종류

-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
- 신용카드매출전표(직불카드)
- 현금영수증
- 간이영수증(3만원이하,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)

가산세

- 법적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: 2%

❖ 정규영수증 수취 제외 대상 사업자와의 거래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
- ②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
- ③ 농,어민(법인제외)으로 부터 재화,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
- ④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
-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, 외국법인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기타 적격증빙 수취 제외 거래

- ①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
- ② 20만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
- ③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한 경우의 지급금액
- ④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 및 주택임대용역
- ⑤ 항만공사로부터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
- ⑥ 사업을 포괄적 양수에 의해 지급한 경우
- ⑦ 전기통신방송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
- ⑧ 읍면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
- ⑨ 공매나 경매, 수용 등의 경우
- ⑩ 택시 운송용역, 항공기 항행용역,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
- ⑪ 입장권, 승차권, 승선권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
- ⑫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분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
- ⑬ 지급지연 연체 이자 지급 시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원천징수

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

| 구 분 | | 소득세 | 퇴직금 | 4대보험가입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근로자 | 직원 | 간이세액표 |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| 가입 |
| | 일용직 | 비과세(10만원/일) |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| 요건충족 시 가입 (월60시간이상근로자 로 1개월이상 재직시) |
| 사업소득자 | | 3%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| 기타소득자 | | 4% (소득금액 5만원이하 비과세)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

III. 협동조합 세무

❖ 4대보험

| 구 분 | 계 | 근로자부담 | 사업주부담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국민연금 | 9% | 4.5% | 4.5% |
| 건강보험 | 6.07% | 3.035% | 3.035% |
| 노인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* 6.55% | | |
| 고용보험 | 1.55% | 0.65% | 0.9% |
| 산재보험 | 0.6% ~ 34%(사업주만 부담) | | |
| 계 | 18% | 8% | 10% |

비과세
급여

- 자가운전보조금 : 20만원
- 식대보조금 : 10만원
- 육아수당 : 10만원

Thank You

윤경만

- 케이엠경영컨설팅 대표
- 경영지도사
- 협동조합컨설턴트
- 희망리턴컨설턴트
- 세무 회계 강사



graceyun07@hanmail.net
010-3332-9114